鷄卵 供給管理方式에 의한 採卵養鷄 産業의 安定化 方案

吳 鳳 國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Ⅰ. 서 론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1970년 이래 몇차례의 양계불황을 겪어왔다. 주요원인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과 유류파동, 사료파동등에 의하여 초래 되었는데 이중에서도 만성적인 생산과잉으로 말미암아 저난가의 장기적 지속이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양계 선진국에서 채란양계산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계란의 자급자족을 달성한 많은 나라에서는 만성적인 생산과잉으로 인하여 "잔치상 벌려놓고 굶주리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 계란의 가격탄성치가 대단히 낮아서(-0.15) 가령 5%의 생산증가는 난가를 약 33%나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난가의 진폭이 커서 불안정하다.

(3) 근년에 와서는 잘못된 영양가치관으로 인하여 달걀에 함유되어 있는 "코레스테롤"지방성분으로 인하여 점차로 소비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과,

(4) 채란양계는 중식이 용이하고, 번식기간이 짧아서 일시에 다량생산이 가능한 축산업이기 때문에 계란파동 주기가 1년반이라는 짧은 주기를 갖이고 있어서 가격변화가 크다.

위와같은 불안요인에 대처하고 안정된 양계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책적 결정에 의한 행정력의 개입으로 계란공급관리(supply management system)방식

을 채택하는 나라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계란생산을 조절하는 계란공급관리 방식을 택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뉴우지랜드, 카나다, 이스라엘, 남아연방, 핀랜드,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 체계의 가장큰 장점은 생산자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데 있다.

표 1. 각국의 난가 : 사료가 비율

나라이름	1976~82	1983~85	나라이름	1976~82	1983~85
자유시장체계			공급관리체계		
미 국	4.4	3.9	카 나 다	5.3	6.0
프 랑 스	3.9	3.5	남 아 연 방	5.6	5.3
화 란	3.6	3.3	뉴으지랜드	5.7	5.3
서 독	3.9	3.5	호 주	6.0	
영 국	3.8	3.5			

공급관리방식의 유형은 대체로 다음의 3가지로 나눌수 있다.

(1) 입추를 규제하는 방법

(2) 산란계 수수를 규제하는 방법

(3) 계란 판매량을 규제하는 방법

위 3가지 방법중 산란계 수수를 규제하는 소위 산란계 수수의 쿼타제 "Hen Quota"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위 3가지를 동시에 규제하는 방법이 선택되기도 한다.

Ⅱ. 카나다와 호주의 계란공급관리제도

1. 카나다 온타리오주 계란공급관리 제도

1) 계란유통기구 창립 역사

○ 1964년 농산물유통관리법에 근거하여 계산물유통기구가 생산업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당시 이 기구는 임의단체로서 영향력이 없었다.

○ 1970～71년 타주로 부터 값싼 계란이 유입되고 가격교란으로 계란전쟁이 일어났고 72년도에는 극심한 양계불황으로 큰타격을 받게되었다. 당시 계란생산가는 타스당 344센트인데 농가판매가격은 21.6센트였다.

○ 1972년 양계불황의 교훈으로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건의로 "양계산업 안정화법안"의 통과로 쿼타제(Quota system)가 실시되고 또한 계란유통기구(Egg Maskating Board)가 설립되었다.

○ 1974년 정확한 통계와 연구부족으로 과잉생산과 저장란의 부패등으로 많은 손실을 발생시켜 손해배상문제가 제기됨.

○ 1975년 : 계란출하 쿼타제에서 산란계쿼타제로 변경하고 계란생산가 산출방법도 새로히 마련함.

○ 1978년 : 1950년이후 계란소비가 점차로 감소됨에 따라 소비홍보사업 전개

○ 1980년 : 계란품질개선사업 시작 또는 생산성기술향상과 소비홍보등에 연구비를 지급.

2) 온타리오주의 채란양계 현황(1986년)

○ 쿼타를 배정받은 농가수 : 789호

○ 채란계 사육수수 : 7,432,931수

○ 평균 호당 사육수수 : 9,000～9,500수

표 2. 사육규모별 사육농가 현황

사 육 규 모	생 산 농 가 수	생산농가비율	쿼타배정비율
500～ 2,000	89	11.74 %	1.42%
2,001～ 10,000	464	61.21	35.92
10,001～ 15,000	89	11.74	14.70
15,001～ 30,000	86	11.35	24.23
30,001～ 50,000	17	2.24	8.56
50,001～500,000	13	1.72	15.14

※ 500수이하를 사육하는 농가 31 호에 대한 쿼타량은 포함되지 않음.

표 3. 계란생산량과 소비량

항목 \ 년도	1978	1980	1982	1984	1986
총생산량 (백만개)	1,848	1,993	2,014	2,012	1,980
총소비량 (백만개)	1,820	1,999	2,047	1,997	1,931
1 인당소비량 (개)	216	233	233	222	216
수 입 량 (백만개)	61	48	67	58	73
수 출 량 (백만개)	53	60.5	26.4	69.8	0
대 란 가 기 준 도 매 값	71	85	93	104	97

비고 (1) 수당생산량 : 250 개/년간

(2) 총생산량의 10 %는 가공난으로 처리

(3) 총생산량의 20 %는 단체급식처에 판매

(4) 총생산량의 70 %는 소매상을 통하여 소비자에 판매

(5) 모든 생산량은 등록된 GP센타로 출하하여 등급된후 소매상에 출하

(6) 등록된 GP센타로 50 개소와 150 개의 대량생산처는 허가받고 자체 등급에 의하여 출하

3) 계란유통기구의 조직과 운영

○ 1972년에 계란유통기구(계란유통공사) 설립

(1) 설립목적

가. 생산자에게 적정수입의 보장과 계란가격 보장(년간 13% 이익 보장)

나. 계란가격의 안정화

다. 계란유통체계의 개선과 효율화

라. 수요에 적응하는 공급과 품질개선

마. 계란의 소비홍보와 시장개발

바. 생산자간의 공평한 이익 배분

(2) 유통기구의 조직

유통기구의 조직은 카나다 연방정부의 조직과 주정부의 조직으로 구분된다. (표 1 참조)

〈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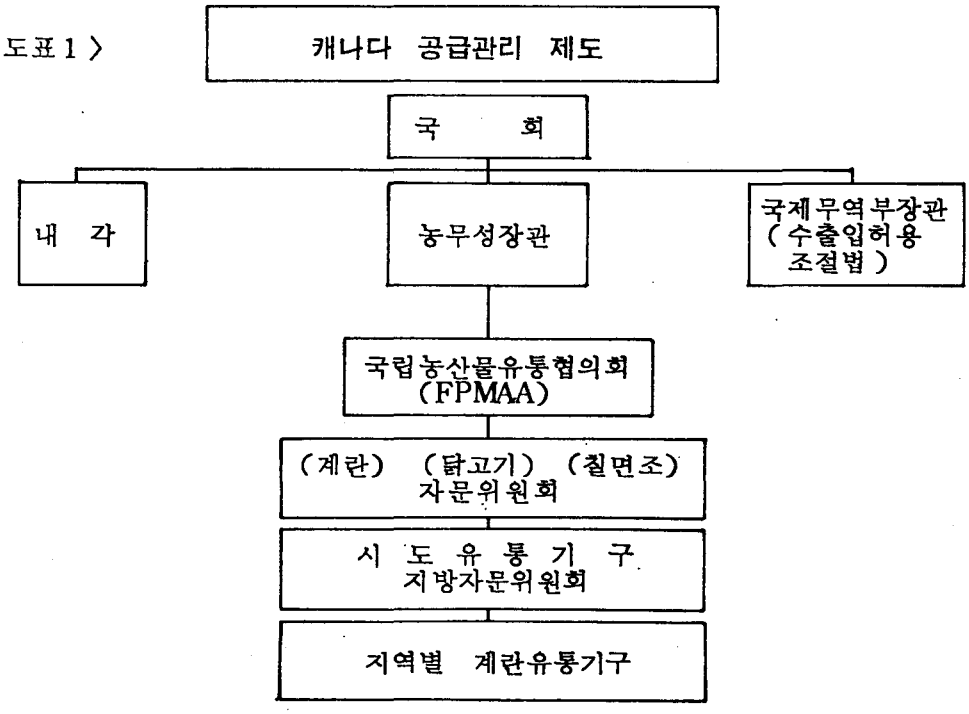

가. 카나다 연방정부의 유통기구

이조직에는 12명의 대의원(이사)으로 구성되며 10개주로 부터 1명씩 생산자 대표 10명과 1명의 정부대표, 그리고 1명의 소비자 대표로 구성된다.

사업의 주요임무는 정부차원의 Quota책정, 과잉계란의 처분, 생산자 가격의 산정, 부과세와 관리비용의 책정, 소비홍보에 관한 사항등이다.

이 기구의 운영은 농수산부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다.

나. 주 정부의 유통기구

주 정부의 유통기구에는 15명의 이사로 운영되는데 13명은 온타리오주의 각지역별 대표와 2명의 육성계 생산자 대표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매월 1회 정례이사회가 있으며 사업으로는 계란유통에 관한 일반행정, 재정, Quota운영, 계란의 수집, 분배, 소비홍보, 연구사업등을 수행하며 이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직원(약30명)을 고용한다.

4) 계란가격의 산정

계란유통기구의 주 임무의 하나는 계란의 생산자 수취가격의 산정이다. 생산자수취가격의 계산은 "생산가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정되는데 이 가격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계란값의 산출기준은 카나다 생산자의 평균사육규모와 년평균 수당 생산량을 기준하며 산출개념은 농가의 적정 수입 가격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매 분기마다 계란생산가를 책정하나 사료값 기타 가격변동에 큰 요인이 있을때에는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카나다 계란생산가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표 4. 카나다 계란생산가 산출내역

(6,000수～30,000수 사육규모) (타스당, 센트)

비 용 항 목	온타리오주	전국평균	비 고
육성비용	14.21	14.51	
사 료 비	37.59	38.95	
인 건 비	14.30	14.39	
지역별 직접생산비	66.10	67.85	
건물기구상각비		4.11	
보험.임차.수리유지비등		6.41	
자본이자. 농가투자부담액		6.20	현실금리로 계산하며 농가 투자액에 대할 보상액
도 단위 부과금		3.50	유통기구의 경상비와 난가공 결손비
운영관리 부과금		3.50	계란 유통기구운영비 및 소비홍보비
대란A급 기준보상액		6.23	
전국평균 생산가		97.79	
기타 비용차감액		-5.21	취급. 수송비등
전국평균 조성생산비		92.58	
대란A급 조정농가 수취가격		94.00	

비고 : 계란생산가 산출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제 3의 부과세금이 따로 징수된다. 이 부과금은 주로 수출입과 기타 결손액보전금으로 사용된다.

5) 공급관리와 할당제도 (Quota syotem)

카나다가 계란공급관리제도를 채택하게된 동기는 채란양계산업의 특성상 만성적인 과잉생산과 생산비 이하의 저난가 형성으로 산업이 불안정하게 되고

난가의 변동이 커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되므로서 양계산업과 계란값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란계수수 쿼타제(Quota)를 채택하게 되었다.

(1) Quota의 결정과 운영

Quota결정의 기본은 계란의 수요예측에 따라 적정 생산량을 산출하고 여기에 기준하여 전체 산란계 사육수수를 책정하게 된다.

Canada의 적정 계란수요량을 475,000,000타스로 보았을때 지금까지의 각 주 시장 점유율에 따라 지역별(주별)의 Quota가 결정된다.

예를들면 온타리오주의 계란시장 점유율은 38.2%인데 이때 온타리오주의 Quota는 38.2%에 활당량을 받게된다.

이때 카나다 정부에서는 지역간 조정을 위하여 인구분포와 1인당 년간 계란 소비량을 감안하여 Quota를 조성하되 실제 수요량추정치에 약 10% 정도 상회 조정하게 된다.

1975년도와 같이 수요 예측치 보다 생산이 과잉 될때에는 산란계 사육수수를 전체적으로 감소 시키는데 1976년도에는 38%에서 35%까지 사육수수를 감소한바도 있다.

(2) Quota제도의 감시와 조정

Quota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항시 활당된 수수 이상으로 사육하는 생산자의 유무를 감시하며 계란생산량(출하량)을 감시한다.

이 두가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자는 지정된 출하기관(GP센타)에 출하하여야 하며 GP센타는 정확히 집하된 계란수와 개인별 통장에 출하량과 등급분류, 공급량을 기장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기록을 토대로 하여 유통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가. 개인별 금전 통장을 만들고 쿼타를 정하는데 사용된다.

나. 부과금을 징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다. 산란계 사육수수 배당량에 대한 계란 출하량을 조사하여 수수확인을 한다.

카나다에서는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육되는 닭의 사육수수는 100수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6) 과잉 생산된 계란의 처리와 수출입

수집 장소로 집하된 계란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 공급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신선한 식란으로서 등급을 한다음 소매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공용 계란으로 난가공 공장으로 공급된다.

계란 소비량 추정은 년간 소비량으로 산출되고 이에따라 생산량에 맞추어 산란계 사육수수의 Quota가 결정되는데 년중 소비량과 산란계의 산란생리로 보아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과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름과 겨울의 소비둔화와 봄. 가을의 소비증가는 계란 생산량의 공급부족으로 10월 난가는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여름철에는 공급과잉으로 체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시적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날 경우도 있으나 2~3개월의 장기 체화와 물량이 넘칠 때에는 생산자 지불가격과 등급, 처리비용 보다도 낮은 값으로 난가공 공장으로 판매하거나 해외로(주로 미국) 수출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결손액은 모두 부과금으로 보전된다.

반면 신선란과 가공난을 수입하여 난가와 부족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7) 소비홍보 사업과 기타사업

계란 유통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일중의 하나가 소비홍보와 연구사업 그리고 품질개량 사업이다.

(1) 소비홍보사업

수요창출을 위하여는 반드시 소비홍보와 품질개량, 상품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타식품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계란의 우수성을 홍보하지 않으면 매년 1인당 소비량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을 막을수 없다.

카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비홍보 방식은 전시회, 지역박람회, 요리책자, 요리강습회등을 하는 외에 라디오, TV, 언론매체등을 이용하고 있고 대량소비처인 음식점이나 단체 급식처에 출장하여 선전과 써비스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경비는 모두 부과금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다.

(2) 연구사업

계란 유통기구에서는 소비홍보를 위한 일환으로 소비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자료를 얻는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양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에 연구비를 주어 육종, 영양사료, 질병, 사양관리 개선등을 연구하게 하고있다. 또한 대학생중 가금학을 전공하여 앞으로 사양농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양계 전문가를 고용하여 세계 저명 가금학 전공학자나 연구가와 접촉하게 하여 최신의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수집케 하여 사양가의 경영효율을 높이며 수출 할수있는 길을 모색케 하고 있다.

(3) 품질개량 사업

계란의 소비신장을 위하는 길은 소비자 기호에 영합하는 좋은 품질의 계란을 생산하는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1980년 부터 계란 품질개량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첫째는 생산자로 하여금 우량한 품질의 계란을 생산 할수 있도록 사양가에게 지도하는 일이며,

둘째는 계란 품질등급 규정을 만들어 합격란에 한하여 출하 공급 하도록 하고 있다.

2. 호주 뉴-사우스웰즈주(N.S.W) 계란공급관리 제도

1) 계란유통관리위원회

호주의 계란공급관리제도는 1927년에 발효된 1차 생산물(농산물) 유통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는데 이제도의 관장기구는 각주의 계란유통관리위원회(Egg Marketing Board), 또는 계란유통공사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뉴으사으스웰주의 계란유통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제도에 의하여 1983년 6월 현재 20수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의 유통을 통제하여 왔다. 위원회의 이사구성은 7명이며 이중 5명은 생산자 대표이고, 2명은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다.

1971～82년까지 유통관리공사에서 취급된 사업실적은 표5과 같다.

표5. 뉴으사우스웰즈 계란유통관리공사 사업실적

항 목 \ 년 도	1971～72	1977～78	1979～80	1981～82
관리위원회 통제하: (백만개)				
총 수집량	852	809	759	760
생산자 단체판매량	242	189	183	194
합 계	1,094	998	942	954
총지불금액(1,000불)	28,180	55,161	57,901	73,252
평균실제 판매가격(a) (센드/타스)	39.7	81.8	91.5	115.7
농가수취가격평균 (b)	27.5	62.2	70.3	84.5
도매가격(센드/타스)(c)	54.9	90.2	114.0	141.0
계란가공량(1,000*kg*)	17,749	14.192	9,966	11,124

주: (a) : -부과금이 포함되어 있다(수출 및 유통상 결손액 보전금등)

(b) : -(a)항에서 제반수수료 및 부과금을 제한 금액

(c) : -소매상에게 판매한 금액

생산업자들은 계란의 판매를 유통관리공사에 직접 의뢰 판매한 것이 기타 다른 판매 방법들에 비하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판매방법의 선호도에 있어서도 유통공사의 통제하에서 구매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생산업자들의 직접 거래는 배달을 직접함으로써 확보한 단골 구매자들로 국한되어 있다.

유통공사를 통한 계란 판매 내용을 살펴보면 계란유통공사는 모든 계란판매 금액을 합산하여 기탁한 계란 량에 따라 평균 실제 가격에 기초하여 기탁자에게 분배되는데 이때 유통공사에서는 계란의 관리 및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다. 1980 - 81년 동안은 타스 당 13센트, 그리고 1981 - 82년에는 13.5 ~ 14.5센트를 공제하였다. 개인 생산업자가 직접 판매할때 유통공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1980 - 81년에는 타스 당 6센트 그리고 1981 - 82년에는 타스 당 4.0 ~ 5.0센트이었다.

관리 위원회의 통제하에 유통된 년간 총 계란량은 표5에서 제시된 바와 같고 이때 유통된 총 물량은 주전체 생산량은 아니다. 계란유통공사의 통제를 받지않고 유통된 계란은 유통공사의 통제를 피하거나 면제된 영세농가들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다.

2) 계란 생산량 할당 제도(Quota 제)

채란 산업 안정화 정책은 계란 소비량에 맞추어 생산량을 제한하는 할당제도(Quota System) 로써 1971년도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계군의 크기에 기초하여 설정된 이 제도는 계란 유통관리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집행되었고 1974년도에 발효되었다. 당시 주 할당량은 5.5백만수였으나 1977년은 4.9백만, 1978년은 4.5백만, 1979년 4.6백만, 그리고 1981년은 4.3 백만수였으며 1982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였다.

3) 채란양계 산업법

이법은 1971년도에 제정된 채란양계산업 안정화제도를 1983년에 개정하여

채란양계산업법 (Egg Industry Act) 을 만들었다. 이법의 골자는 계란유통관리위원회와 양계농가에 대한 면허제도를 일부 수정 보완한 것으로써 뉴으사으스웰주 계란 법인체가 설립되었고 양계 면허 발급 위원회가 재구성되었는데 이 두단체는 뉴으사우스웰주 농수산부의 장으로 부터 직접 통제를 받는다.

이 법인체는 7인으로 구성되는데 의장1인, 농수산부의 장이 임명한관리 책임자 1인, 주에서 선출된 계란 생산자 대표 4인, 그리고 1인은 소비자 보호부의 장이 임명한다. 법인체 즉 계란유통공사의 주된 기능은 계란과 계란 생산물의 유통관리, 수집, 등급, 난질검사, 포장, 분배, 도매가격의 결정 및 판매 등 이다. 이 법규는 생산자 단체에게 계란의 유통관리를 위임하였는데 이 법인체는 농가로 부터 계란을 운반하고 운반된 계란의 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하여 농가에게 지불할 임무를 가진다.

양계 면허 발급 위원회는 농수산부의 장이 임명한 4인으로 구성되는데 구성원으로는 회장 1인, 생산자 대표 2인, 그리고 저명인사 (학자) 1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주업무로는 농수산부의 장에 의하여 배정받은 주 할당량을 면허 취득자에게 사육 규모량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일이다.

위원회의 법규에 따르면 가금 사양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과 더불어 양도를 인정하고 자격의 재부여, 할당량의 거래, 할당량을 초과한 계란과 닭의 압수 등에 관한 일이다. 또한 면허 취득료 (Licenced fee) 를 책정하고 징수하며 면허 규약에 대한 위반 여부를 감독할 자격이 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업무는 주 (State)의 닭 사육수수가 예상 소비량에 맞추어 생산할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생산량을 조절하는 다른 방법으로써 자격증 소지자가 자원하여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지하는 것인데, 위원회와 자격증 소지자들은 가금사양수수의 결정과 폐업을 상호협의하여 배당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생산 중지할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과잉 생산량을

빠른 시일내에 감소시킬 수 있고 사양가에게 부여한 배당량을 강압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없는 잇점이 있다.

4) 가금산업의 부과금(조세, Levy)

1965년 가금산업 조세법과 가금산업 보조법에 따라 정부는 산란계 사양가에게 세금을 징수하였고 가금산업 육성에 대한 경비를 관장하였다.

부과금은 2주 이상 20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하여 사육수수에 따라 부가되었다. 각 주의 계란 유통관리 위원회가 징수한 년간 최대 부과금(이 부과금은 가금산업 신용기금으로 쓰여짐)은 수당 2불씩 징수되었다(1982-83년은 수당 1.95불)이 기금의 주된 용도는 계란 유통관리 위원회가 관장하여 계란 가격 조절 자금으로 사용하며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기금 일부는 연구 지원비로 사용되었다. 1981-82년 동안에 호주 양계가들로 부터 징수된 총 기금은 20.2백만불이었는데 이중 8.6백만불이 뉴으사우스웰주로 부터 징수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에 19.5백만불이 국내판매와 국외수출을 통하여 양계업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분배되었고 이중 9.5백만불이 뉴으사우스웰주 계란유통 관리 위원회에 의해 양계업자에게 재분배되었다.

5) 가금산업 연구

생산자로 부터 징수된 부과금의 일부지출은 가금산업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유통 연구 활동비에 지원되었다. 호주의 계란 유통 협의회의 후원에 의하여 1차산업 담당장관이 이 연구비의 지출을 관장하였는데 이 지출 금액은 년간 최고 예산 금액을 150,000불로 책정하여 정부와 협의하에 사용되었다.

1982-83년 동안 계란 유통 당국, 주 농무성, CSIRO, 대학, 그리고 기타 관련기관들에게 연구비로 지급된 총 경비는 379,000불로 추정되었다.

6) 계란 생산품의 해외 유통

호주의 계란과 계란 생산품의 해외 수출은 1947년 계란 수출 규제법에 따라 호주 계란 관리 위원회에 의하여 통제받았다. 호주 계란 관리 위원회는 6인의 주 계란 관리 위원회 대표(이중 2인은 뉴으사우스웰주 관리 위원회 대표임)와 정부에서 임명한 의장 1인, 생산자 대표 1인, 그리고 관리인 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주 거래 내용은 주 계란 관리 위원회의 수출부에서 조절한 계란과 생산품의 물량범위 내에서 해외 유통이 이루어 졌는데, 수출을 희망하는 주 관리 위원회는 호주 계란 관리 위원회의 수출 조건과 규격의 규제를 받아야만 하였다. 주 계란 유통 규격에 기초하여 1978~79년 동안 뉴으사우스웰주로 부터 해외로 유통된 계란량은 다음과 같다.

표6. 년도별 계란 수출량

년도 / 항목	1979	1980	1981	1982
식 란(단위 100 개)	4104	6492	5748	4548
가공란(단위1000kg)	3,119	1,802	3,877	2,942
가 격($ 1,000)	4,957	2,748	5,609	4,960

3. 카나다와호주의 계란 공급관리 제도 비교

항 목	카 나 다	호 주
1. 공급관리제도 제정년도	1972년, 농산물 유통관리법에 근거(1964)양계산업안정법제정.	1971년, 1차 상품유통관리법에근거(1972), 양계산업안정법제정
2. 관 리 기 구	계란생산자 유통위원회 (Egg producers' Marketing Board)	계란유통위원회 (Egg Marketing Board)
3. 사 업 목 적	(1)생산자에게 적정수입과계란의 적정가격유지	동 일

항 목	카 나 다	호 주
	(2) 계란가격의 안정화 (3) 수요에 적응하는 공급과 품질개선 (4) 계란유통체계의 개선과 효율화 (5) 계란소비홍보와 상품개발 (6) 생산자간에공평한수익배분	
4. 사업내용	(1) 계란의 수집, 등급, 포장, 공급 등에 관한행정, 유통, 재정 (2) 관촉사업 (3) 쿼타의 책정과 운영 (4) 계란생산가격의결정 (5) 과잉계란의 처분과수출입사항	동 일
5. 조직과구성	. 12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주대표 1명씩 10명과 정부대표자 1명, 소비자대표 1명 . 농무성의 감독과지도를 받는다	. 7명의 이사로 구성하며 4명의 생산자 대표와 2명의 정부 지명인사 (이중 1명은위원장, 1명은 전무이사)그리고 1명의 소비자 대표로구성 . 정부의 감독과지도를 받는다
6. 쿼타의 책정과 운영	. 수요와 공급량에따라 결정 . 사양수수 100주 이상 농가에해당 . 면허증 소지농가에한하여 할당 . 면허증과 할당량은 양도가능	통 일 . 사양수수 20수 이상농가 해당 통 일 통 일

항 목	카 나 다	호 주
	. 위반시에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과금을징수	동 일
	. 면허발급위원회 설치	동 일
	. 산란계를 대상으로 할당 (hen quota)	동 일
7. 부 과 금	. 계란 수급조절 및 생산자 보조 자금으로 사용	동 일
	. 계란유통 위원회에서책정, 정부의 승인사항	동 일
	. 대란 1타스 기준 10센트 (수당 2.10불)	. 산란계 수당 2불
8. 소비홍보 및 연 구 사 업	. 소비위축을 방지하고, 시장 개척과 소비창출을 위한 홍보및 상품 개발등 사업 (1987년 200만불 사용)	동 일
9. 연 구 사 업	. 가금산업의 생산성향상과 안정화 방안을 위한 연구	동 일 (년간 15～20만불사용)
10. 수출입사업	. 과잉생산물에대한 처리 및 수출시장 개발	동 일
	(온타리오주 170만불수출, 534만불수입, 1985년도)	(약 500만불에 해당하는 난 가공품 수출)
문 제 점	. 산란계 쿼타가 주식처럼 가격과 거래가 형성됨.	. 유통위원회를 통하지않고 뒷거래가 성행되고 있음.

Ⅲ. 결 론

1. 공급조절체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1)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폭적인 지지기반이 이루어 져야 한다.

(2) 이체제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강제성을 띠어야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벌금 또는 상응하는 처벌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력이 위받침 되어야 한다.

(3) 모든 생산자는 의무적으로 이체제에 참여하여야 하며 무임승차자가 없어야 한다. 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간 또는 기존생산자와 새로 가입한생산자 모두가 규제를 받아야 한다.

(4) 이제도에 참가하지 않는 생산자의 산란계 사육수수는 최소의 수자로 제한 하여야한다. (예 : 100수이하 규모)

(5) 산란계 쿼타는 양도가 되도록 해야하나 양도규모는 어느정도 규제되어야 한다.

(6) 제도운영과 부과금 객출을 위하여는 산란계 수수를 기초로 하여야하며 생산되는 계란량에 기준하여서는 안된다. 중요한 이유는 높은 생산성향상을 피하도록 촉진하기 위함이다.

(7) 계란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시장 파악과 연구가 필요하다.

(8) 이 제도가 양계산업을 비효율화 시키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신규 참여자에 대한 어느정도의 영역을 마련 하여야 한다.

(9) 소비자를 비롯하여 다른 관련분야로 부터의 불평이나 생산자 상호간의 불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10) 생산자의 최대 사육규모를 적정선에 책정하여 과다 보유로 인한 이익의 편중적 분배를 방지하여야 한다.

2. 계란공급관리체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산란계수수 쿼타제를 도입할 경우 현존양계가 만을 지원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나 쿼타를 인수하는 사람은 프리미엄을 지불하여야하는 불평을 한다.

(2) 공급관리체제는 새로운 기술을 가진 양계가의 진출을 막고 낙후된 기존 양계가만을 유지시켜 생산효율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3) 소비자는 공급관리 비용이 추가되는 높은 난가에 대하여 불평하며 또한 생산자 단체들에 의하여 독점가격으로 난가가 조절되는 전매체제를 비난한다.

(4) 어떤 생산자는 개인의 생산자유를 침해하는 관료제도라고 비난한다.

(5) 공급관리체제 밖게있는 채란양계가로부터 생산된 계란에 의하여 2중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며 암시장이 형성될 위험이 크다.

(6) 공급관리제도 시작초기에 흔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공급조절체제 밖게있는 비조절농장에서 생산된 많은 공급량이 잠식해 옴으로서 수요의 감소로 인한 공급체제의 기능을 마비시킬 위험이 있다.

(7) 쿼타제를 실시한 여러나라에서의 경험상 교훈을 살펴보면 일단 시도된 제도는 되돌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생산관리체제를 원만히 도입하려면 자유시장체제로 부터 점진적으로 시도되어야할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

이 발표논문은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가지 모형(model)을 제시 하는 것이지 계란공급체제가 반드시 우리실정에 적합한 방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가지 안정화 방안중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model를 도출하여 양계산업 안정화에 기여하자는데 심포지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